■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개정 2017. 10. 26.>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강 하 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3	
	주소 서울시 광진구 ○○○로 123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이륜자동차	차명 (예시 : 데이스타 250) WW125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124cc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상동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성명 강하늘 *강하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123456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